

本部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있어 왔는데 國家機關이 우리 行政機關을 使用하게 되면 議會의 同意를 받도록 規定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議會의 同意를 받아서 各 洞에 있는 豫備軍 中隊本部 事務室과 우리 區에 存置하고 있는 區機動隊 事務室을 無償으로 賃貸해 주고자 하는 事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內容은 使用許可 內譯書를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 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沙下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995年度公有財產管理計劃同意案

(以上 2件 끝에 실음)

○委員長 金信祐 朱剛右 財務課長 수고했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바랍니다.

○專門委員 沈玩澤 釜山直轄市沙下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1. 제안이유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있어서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 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조례 제8조 : 물품매입 요구에서 단서조항인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여 이 경우에도 주관 과장은 경리관에게 요구하도록 하였고
- 조례 제17조 제4항 : 불용물품 감정가액을 장부상 취득가액 500만원 이상을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 조례 제24조 : 물품 출납원 장부의 제4호인 소모품 대장을 삭제
- 별표1 : 물품의 품종, 상태 구분에서 비품의 내용연수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임

3. 검토의견

사하구 물품관리 조례 제8조 단서의 관서당 경비로서 물품을 구매, 수리, 제조할 시에도 물품 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요구토록 한 것은 회계 질서를 확립하도록 한 것이고

제17조의 불용 물품 매각시 장부상 취득가액을 상향조정 한 것 등은 감정 비용을 절감하도록 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199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의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총 괄

(단위 : m², 천원)

구 분	계			토 지			건 물		
	건수	면 적	추정금액	건수	면 적	추정금액	건수	면 적	추정금액
취 득	3	34,737	6,433,366	2	33,648	5,764,720	1	1,089	668,646
처 분	4	1,314.81	989,904	2	499	886,450	2	815.81	103,454
무상내용	18	2,071.3	.	.	.	.	18	2,071.3	.

－ 내 용

가. 취득대상 재산내역

(단위 : m², 천원)

사 업 명	소 재 지	구 분	면 적	추 정 가 액	시 기
구 청 사 신 축 부 지 취 득	사하구 신평동 산26-3번지 일원	토 지	33,040 (9,994평)	5,000,000	4/4분기